	초과수당 및 강사료 지급 업무	문서번호	BIST-ⅡA-032
		주관부서	학사운영팀
		담 당 자	담당

가. 목적

○ 교원의 초과 강의시간과 겸임 및 외래교수의 강의시간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업무이다.

나. 관련 법규

○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강사료 지급규정 제3조, 제5조
○ 시간강사위촉 및 강사료지급규정 제9조
○ 사이버강의 운영 규정 제8조

다. 업무 흐름도

업무흐름도	업무시기	업무처리방법 및 관련서식
1. 강사료 지급 자료 프로그램 입력 (학사관리시스템) ⇩ 2. 강사료 지급에 대한 내부결재 ⇩ 3. 재무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	1학기 : 3월~6월 2학기 : 9월~12월	

라. 업무처리지침 및 유의사항

1. 강사별 지급 자료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입력한다.

가. 강사별 지급단가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입력한다.

: 월강의시간관리 → 시간표 주강의시간 생성한다.(전임교수 책임시수 책정, 보직교수 별도)

나. 추가지급액을 등록한다.(시간외 추가지급)

- 직책수당 : 겸임교수 - 매학기 4개월기준 년간 8개월(1학기 3월부터 6월, 2학기 9월부터12월)의 연구수당을 당해 학기말에 지급하며 학기별 수업시수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[2014. 8. 13]

1. 2시간 이하 : 학기별 10만원(연간20만원) 지급
2.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: 학기별 20만원(연간40만원) 지급
3.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: 학기별 40만원(연간80만원) 지급
4. 9시간 이상 : 학기별 60만원(연간120만원) 지급

- 사이버강의 시수인정

수강인원	추가강사료(주당)	수강인원	추가강사료(주당)
101명 ~ 180명	11,000원	341명 ~ 420명	44,000원
181명 ~ 260명	22,000원	421명 ~ 500명	55.000원
261명 ~ 340명	33,000원	501명 이상	66,000원

- 외국인전담교수 팀티칭 시간 - 주당 6시간

다. 월강의시간 생성한다.

- 1학기 : 4주-4주-4주-3주(15주)
- 2학기 : 4주-4주-4주-3주(15주)

라. 월강의시간 수정한다.

보직변동이나, 위·해촉이 학기 기간중 발생 된 경우 초과시간, 수당 직접 계산하여 입력

2. 강사료 지급에 대한 내부결재를 한다.

가. 강의시수계산서와 강사료 산출내역을 비교후 강의시수계산서를 출력한다.

나. 겸임교수 수당지급내역서, 사이버강좌 수강인원 현황을 출력한다.

3. 강의료 지급 요청 : 학사운영팀에서 집계하여 내부결재이후 재무팀으로 이관한다.

가. 강의료 지급 - 재무팀

나. 당월분 강의료 지급 기준일 : 익월 5일

다. 강의료 지급 방법 : 식대 및 4대보험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.